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령집

---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p>
<p>&lt; 목차 &gt;</p>	<p>&lt; 목차 &gt;</p>	<p>&lt; 목차 &gt;</p>
<p>제1조(목적) ..... 1</p>	<p>제1조(목적) ..... 1</p>	<p>제1조(목적) ..... 1</p>
<p>제2조(정의) ..... 2</p>	<p>제2조(기타의 항공기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2</p>	
<p>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3</p>	<p>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3</p>	
<p>제4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4</p>	<p>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 4</p>	
<p>제5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4</p>	<p>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 4</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p>	
<p>제7조(실적보고) ..... 4</p>	<p>제7조(실적보고) ..... 4</p>	
<p>제8조(제거) ..... 5</p>		
<p>제9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5</p>	<p>제8조(육성할 품목등의 지정등) ..... 5</p>	<p>제2조(삭제) ..... 5</p>
<p>제10조(결격사유) ..... 6</p>		<p>제3조(삭제) ..... 5</p>
<p>제11조(사업의 승계) ..... 7</p>		<p>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 5</p>
<p>제12조(지정의 취소) ..... 8</p>		<p>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사 함작사항) ..... 6</p>
<p>제13조(제거) ..... 9</p>	<p>제9조(육성할 품목등의 지정공고등) ..... 7</p>	<p>제6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 7</p>
<p>제1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 9</p>		<p>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 7</p>
		<p>제8조(삭제) ..... 7</p>
		<p>제9조(삭제) ..... 9</p>
		<p>제10조(위탁기관의 장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 9</p>
		<p>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 9</p>
		<p>제12조(검사실 시기관의 지정) ..... 9</p>
		<p>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업업체의 지정신청) ..... 11</p>
		<p>제14조(삭제) ..... 12</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제11조(시용의 제한등) .....	제10조(자감등의 지원신청) .....	제15조(삭제) .....
제12조(자감의 지원) .....	제11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제16조(삭제) .....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	제12조(신교사업자의 신청등) .....	제17조(삭제) .....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의 설치) 20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18조(삭제) .....
제15조(심의회의 기능) .....	제14조(심의회의 위원) .....	제19조(삭제) .....
제16조(심의회의 구성 등) .....	제15조(위원장) .....	제20조(감사의 신청) .....
제17조(연구기관의 설립) .....	제16조(회의) .....	제21조(감사결과와 통지서의 교부) .....
제18조(削除) .....	제17조(간사) .....	제22조(합격의 표시) .....
	제18조(운영위원회) .....	제23조(계약사의 신청) .....
	제19조(수당)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
	제20조(운영세칙) .....	제25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 .....
	제21조(연구기관의 명칭 및 설립등) .....	제26조(감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제22조(연구기관의 명칭 및 설립등)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제23조(연구기관의 명칭 및 설립등)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여등 추천기준)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24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24
제20조(검사수수료)..... 26		제30조(검사 수수료)..... 26
제21조(벌칙)..... 26		
제22조(양벌규정)..... 26		
제23조(削除)..... 27	제22조(삭제)..... 27	제31조(삭제)..... 27
제24조(削除)..... 27	제23조(삭제)..... 27	
부칙..... 27	부칙..... 27	
부칙(91·12·14)..... 27		
부칙(93·3·6)..... 28	부칙(93·3·6)..... 28	부칙..... 28
부칙(97·12·3)..... 28	부칙(93·7·1)..... 28	
부칙(99·2·5)..... 28	부칙(94·12·23)..... 28	
	부칙(94·12·23)..... 28	
	부칙(99·2·26)..... 28	
		별표..... 29
		별지 서식..... 31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p> <p>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p>
<p>제1條(目的) 이 법은 航空宇宙産業을 合理的으로 지원·육성하고 航空宇宙科學技術을  효율적으로 研究·開發함으로써 國民總濟의  進進한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에  益을  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次와  같다. &lt;改正 93·3·6, 97·12·31, 99·2·5&gt;</p> <p>1. “航空宇宙産業”이라  稱은  航空機·宇宙飛行器·關聯附屬機器類 또는  關聯素材類를  生産(製造·加工·組立·再生) 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航空法에   의한  航空機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該機上의   필요로  行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事業과  航空機·宇宙飛行器</p>	<p>제정 1989·12·13 대통령령제12849호 개정 1993·3·6 대통령령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7·1 대통령령제13922호 (대외무역법시행령)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1999·2·26 대통령령제16133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關한  事와  該  法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99·2·26&gt;</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목적으로  한다.</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p>
<p>를 産業資源部가 정하는 비에 따라 이용 하는 應川事業(航空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航空機"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飛 行·回轉翼航空機·滑空機·飛行艇과 기타 大統部가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3. "宇宙飛行器"라 함은 地球大氣圈 外의 飛 行할 수 있는 宇宙發射體·航空宇宙船·人 工衛星·有人 또는 無人宇宙船과 기타 大統 部가 정하는 宇宙飛行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4. "關聯機器類"라 함은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器의 構成품을 말 한다. 5. "關聯材料類"라 함은 "素材類"라 한다라 함 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器의 生産에 사용 되는 材料를 말한다. 6. "航空宇宙科學技術"이라 함은 航空宇宙産業 에 關連되는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外의 飛 行에 關連되는 科學技術 또는 航空機·宇宙 飛行器를 이용하는 應用科學技術을 말한다.</p> <p>第3條(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 는 航空宇宙産業의 開發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政府가 購買하는 航空機·宇宙飛行器·機器</p>	<p>제2조(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lt;개정 99·2·26&gt; 1. 기구 2. 유도 또는 자동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우주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탑도련 3. 진이케도 추진로켓트 4. 웨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p> <p>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p>
<p>類 및 素材類의 年度別 · 機種別 需要 2. 航空宇宙産業의 專門化 및 系列化 3. 航空宇宙科學技術의 研究 · 開發을 위한 綜合 研究體制 및 研究 · 開發 豫算 4. 國際共同開發事業에의 참여 및 技術導入計劃 5. 기타 航空宇宙産業의 開發에 관한 중요사항</p> <p>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基本 計劃에 따라 매년 그 施行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p> <p>第4條 (改正 93·3·6, 97·12·13, 削除 99·2·5)</p>	<p>93·3·6, 99·2·26)</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3·3·6, 99·2·26)</p> <p>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산업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3·3·6, 99·2·26)</p> <p>제5조(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5년이 상으로 한다.</p>	<p>제2조 &lt;삭제 99·3·13&gt;</p> <p>제3조 &lt;삭제 99·3·13&gt;</p> <p>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li> <li>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li> <li>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lt;개정 99·3·13&gt;</li> </ol> <p>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침착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li> </ol>
<p>第5條(特定事業者의 지정 및 지원)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品目등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2·5)</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②産業資源部長官은 航空機·宇宙飛行器·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生産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航空宇宙産業事業者"라 한다)중 第1項의 品目 등을 生産하거나 生産할 事業者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定事業者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lt;改正 98·3·6·97·12·13.99·2·5&gt;</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2.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채고할 수 있을 것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진문화 및 제얼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lt;개정 99·3·13&gt;</p>
<p>第6條(缺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台産者 또는 限定生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법에 위반하여 罰金의 刑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職中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p>	<p>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고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고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第7條(事業의 承繼)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事業者가 死한하거나 그 事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特定事業者의 合併이 있을 때에는 그 相繼人,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한  후存 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特定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다만, 그 相繼人, 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併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p>	<p>제7조(실적보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99·2·26&gt;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93·</p>	<p>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lt;개정 99·3·13&gt; 1.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6條 各條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改正 93·3·6, 97·12·13, 削除 99·2·5</p> <p>第8條(지점의 取消) 商工資源部長은 特定事業者가 다음 各條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점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特定事業者가 第4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당해 任직을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改正 93·3·6, 97·12·13, 99·2·5&gt;</p> <p>1. 特定事業者가 相當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休止한 때</p> <p>2. 特別 기타 相當한 방법으로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p> <p>3.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가 정하는 요건에 부속함하게 된 때 &lt;改正 99·2·5&gt;</p> <p>4. 第6條 各條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3·6·99·2·26)</p> <p>제8조(육성할 품목등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93·3·6, 99·2·26&gt;</p> <p>1.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p> <p>2. 연구·개발 또는 그 생산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되어 있을 것</p> <p>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외의 산업여건상 그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lt;개정 99·2·26&gt;</p> <p>②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필요성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93·7·1, 99·2·26&gt;</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p>	<p>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p> <p>제8조 &lt;삭제 99·3·13&gt;</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9條 (改正 93·3·6, 97·12·13, 削除 99·2·5)</p> <p>第10條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 ①航空宇宙産業事業者 또는 特定事業者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生産을 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lt;改正 93·3·6, 97·12·13, 99·2·5&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의 대상·施設·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lt;改正 93·3·6, 97·12·13, 99·2·5&gt;</p> <p>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에 合格된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合格證을 貼付한다. &lt;改正 93·3·6, 97·12·13, 99·2·5&gt;</p>	<p>정한 품목들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93·3·6, 99·2·26&gt;</p> <p>제9조(육상할 품목등의 지정공고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제10조(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제9조 삭제 99·3·13</p> <p>제10조(위탁기관의 징집등의 사업신고내용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lt;개정 99·3·13&gt;</p>
	<p>제11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운영</p>	<p>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만, 試驗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航空機·宇宙飛行體·器器類 또는 素材類를 試驗飛行등의 用途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航空法第1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試驗飛行등을 許可하여야 한다. &lt;改正 91·12·14, 97·12·13, 99·2·5&gt;</p>	<p>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대부·양여·사용 또는 수익가능한 국유 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통보하여 출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li> <li>2. 검사·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li> <li>3. 생산 및 검사용 건물</li> <li>4.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li> <li>5. 우주발사시설</li> <li>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lt;개정 99·2·26, 99·2·26&gt;</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청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④제1항 각호의 시설 및 기기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99·2·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li> <li>2.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운용하고 있는</li> </ol>	<p>은 별표 2와 같다.</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12條(資金의 지원) 政府는 航空宇宙産業의 育成과 航空宇宙科學技術의 研究·開發을 爲하여 長期低利資金과 研究開發事業費를 지원할 수 있다.</p>	<p>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lt;개정 99·2·26&gt;</p> <p>3.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불가항력에 의한 제도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p> <p>⑤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후 반환할이 부적당한 경우</p> <p>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치라 하는 경우</p>	<p>제12조(검사실시기관의 지정) ①사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p>	<p>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상관의 추인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②산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p>	<p>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상관의 추인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②산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p>	<p>제12조(검사실시기관의 지정) ①사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p>
<p>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상관의 추인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②산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p>	<p>제12조(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상관의 추인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②산업자원부상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p>	<p>제12조(검사실시기관의 지정) ①사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 검사기관을 지정(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p>
<p>第13條(國有施設 및 機器 등의 貸與 등) ①政府는 航空機, 宇宙飛行器, 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研究, 開發이나 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國有의 施設</p>	<p>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5조제5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p>	<p>소계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lt;개정 99·3·13&gt;</p> <p>2. &lt;삭제 99·3·13&gt;</p> <p>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부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업채를 지정(이하 "검사수입업체"라 한다)하여 자사생산품종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입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입업체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입업체의 명칭</li> <li>2. 대표자 성명</li> <li>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li> <li>4. 검사대상</li> <li>5. 검사개시일</li> </ol> <p>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입업체의 지정신청)</p> <p>①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입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또는 機器 등을 航空宇宙産業事業者에게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99·2·5&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의 조건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실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p>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1부</li> <li>2. 검사실비의 보유현황 1부</li> <li>3. 검사실비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li> <li>4.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li> </ol> <p>②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1부</li> <li>2. 검사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상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실비에 관한) 1부</li> <li>3. 검사실비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상능검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실비에 관한) 1부</li> </ol> <p>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第14條(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의 設置) 政府의 基本計劃의 수립과 이에 따른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部處간의 主要業務의 調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심의회의 위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lt;개정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9·2·26 대령1613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경제부장관</li> <li>2. 국방부장관</li> <li>3. 과학기술부장관</li> </ol>	<p>제14조 &lt;삭제 99·3·13&gt;</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15條(審議會의 機能)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基本計劃의 수립</li> <li>2. 基本計劃과 관련된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都廳간의 主要業務의 調整</li> <li>3. 基本計劃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歲出職務의 수립</li> <li>4. 航空宇宙科學技術의 研究·開發活動에 대한 總括·調整</li> <li>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li> </ol>	<p>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건설교통부장관 7.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8.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5조 &lt;위원장&gt;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第16條(審議會의 구성등) ①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審議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에서 大統領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③審議會의 委員은 民間·軍事部分간의 業務調整 및 協調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p>	<p>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한다.</p>	<p>제16조 &lt;사제 99·3·13&gt;</p>

항공우주産業開發促進法	항공우주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항공우주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항공우주産業開發促進法</p> <p>하는 바에 따라 諮議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p> <p>④ 諮議會의 職務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諮議會에  産業資源部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航空우주産業開發政策職務運營委員會(이하 "運營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lt;改正 93·3·6, 99·2·5&gt;</p> <p>⑤ 諮議會 및 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항공우주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p> <p>제7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p>	<p>제17조 &lt;삭제 99·3·13&gt;</p>
<p>제17條(研究機關의 設立) ①政府는 航空우주科學技術의  研究·開發을  持統的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航空 및  宇宙의  分野別  研究機關 또는  綜合研究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研究機關의  名稱 및  設立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研究機關은  特定研究機關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研究機關으로  한다.</p>	<p>제18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이</p>	<p>제18조 &lt;삭제 99·3·13&gt;</p>
<p>第17條의2(정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依한  特定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lt;新設 99·2·5&gt;</p>	<p>제18條 &lt;改正 93·3·6, 97·12·13,  削除 99·2·5&gt;</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19條(權限의 委任·委託) ①産業資源部長은 檢査業務를 産業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專門檢査機關 또는  일정한 資格이 있는 者에게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lt;改正 93·3·6, 97·12·13, 99·2·5&gt;</p> <p>②科學技術部長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研究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lt;改正 99·2·5&gt;</p>	<p>되고, 위원은 제14조제1호 내지 제7조에 해당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1급 또는 1급상당이 상공 무인과 항공우주산업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93·3·6, 99·2·26&gt;</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관련 전문 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15조 내 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위 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9조 &lt;삭제 99·3·13&gt;</p>
<p>第20條(檢査手數料)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lt;改正 93·3·6, 99·2·5&gt;</p>	<p>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 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 해 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 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21條(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제21조(연구기관의 명칭 및 설립등) ①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명칭은 항공항공우주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립한다.</p>	<p>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자료 1부</p> <p>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第2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을 科한다.</p>	<p>제22조(합격의 표시) ①산업자원부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상이 합격증을 첨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lt;개정 99·3·13&gt; ②산업자원부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 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제22조(합격의 표시) ①산업자원부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상이 합격증을 첨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lt;개정 99·3·13&gt; ②산업자원부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 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 ③산업자원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第23條(制除) 第2·2·5)</p>	<p>제23조 &lt;개정 93·3·6, 삭제 99·2·26&gt;</p>	<p>제23조(제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24條 (削除 99·2·5)</p>		<p>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지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물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재원을 받지 아니한다. &lt;개정 99·3·13&gt;</p> <p>②산업지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양 정상 확보 및 품질보중에 적정할 것</li> <li>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된 것</li> <li>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li> <li>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기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li> <li>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졌을 것</li> <li>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지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lt;개정 99·3·13&gt;</li> </ol> <p>제25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 ①산업지원부장관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산하는 품목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제의 대상</li> <li>2. 면제의 범위</li> <li>3. 면제의 기간</li> <li>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lt;개정 99·3·13&gt;</li> </ol> <p>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신고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신고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의 목적 및 내용</li> <li>2. 시험의 일시 및 장소</li> </ol> <p>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99·3·13&gt;</p> <p>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99·3·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li> <li>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li> <li>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li> </ol>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기술품질원장에 게 위임한다. &lt;개정 99. 3.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검사기관 및 검사수업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li> <li>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검사기관 및 검사수업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 추가신청서의 접수</li> <li>3. &lt;삭제 99. 3. 13&gt;</li> <li>4. &lt;삭제 99. 3. 13&gt;8.</li> <li>5. &lt;삭제 99. 3. 13&gt;</li> <li>6. &lt;삭제 99. 3. 13&gt;</li> <li>7. &lt;삭제 99. 3. 13&gt;</li> <li>8. &lt;삭제 99. 3. 13&gt;</li> <li>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li> <li>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및 면제내용의 고시</li> <li>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li> <li>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li> <li>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li> </ol> <p>②산업사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을 받은 전문 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lt;개정 99. 3.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li> </ol>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및 검사의 실시</p> <p>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p> <p>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첨부</p> <p>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기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다. &lt;개정 99·3·13&gt;</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장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99·3·13&gt;</p> <p>제30조(검사수수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강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t;개정 99·3·13&gt;</p> <p>②건설교통부장관·국립기술품질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각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lt;삭제 99·3·13&gt;</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附則</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①航空工業振興法은 이를 廢止한다.</p> <p>②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航空工業振興法에 의하여 행한 許可·申請 및 檢査 기타의 處分은 이 법에 의한 申請 및 檢査 기타의 處分으로 본다.</p> <p>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航空工業振興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p> <p>附則 (91·12·14)</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2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및 第3條 省略</p> <p>附則 (93·3·6)</p>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p> <p>부 칙 (93·3·6)</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부 칙 (99·3·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施行規則
<p>第2條 내지 第5條 省略</p> <p>附則〈97·12·13〉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H.群省 略〉</p> <p>附則〈99·2·5〉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부 칙 〈93·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부 칙 〈94·12·23 대통령령 14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부 칙 〈94·12·23 대통령령 144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부 칙 〈99·2·26 대통령령 16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제11조관련)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공기	고정익 비행기	소형비행기(5.7톤미만)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대형비행기(5.7톤이상)	
	회전익 비행기	소형비행기(2.7톤미만)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대형비행기(2.7톤이상)	
항공기	무동력항공기 동력항공기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기타 비행체	기타비행체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우주 비행체	우주 비행체	인공위성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우주발사체	
		기타 우주비행체	
기 기	동력 장치	왕복기관 터보기관 액체기관 고체기관 가타 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동력장 치기기	
	보 기	기계보기 전기보기 전자보기 동력장치 부착기기 기타 보기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동체계 익 계 기타 구조물계	
소재	금속재료 비금속재료 복합재료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지원 장비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장비 기타 장비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지상훈 련기능	지상 훈련기 기타 훈련장치	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별표 3] 검사수입업체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관련)

1. 검사수입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생산 및 검사가 수행되고 있음이 검증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사·측정·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검사수입대상품목의 성능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항공·일반기계·정밀기계·계량·원동기검사·금속·공정관리·품질관리·화공·전자·공업계기·전파통신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월이상 해당품목의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았거나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이상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2) 외국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검사원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이상 생산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3)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해당품목의 연구나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검사수입대상품목을 생산하여 3회이상 연속적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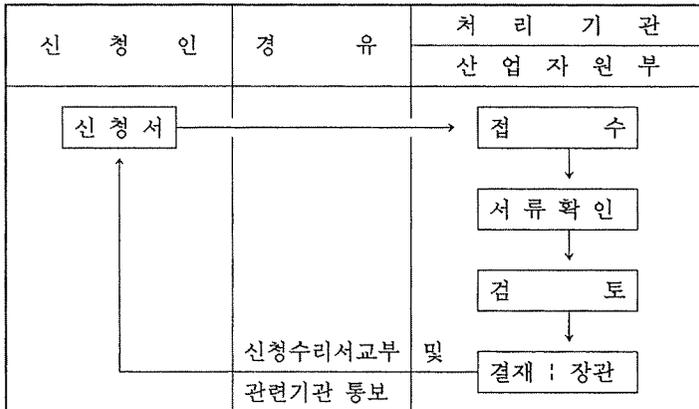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FAX)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신청내용	⑥합 작 선			
신청내용	⑦사업 구분			
	⑧생산 품목			
	⑨공장소재지			
	⑩항공우주사업의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8282-13811민  
89. 1. 1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p>특 정 사 업 자 지 정 서</p>			
특 정 사 업 자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FAX)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생 산 품 목 명	⑥사업 구분		
	⑦생산 품목		
	⑧공장소재지		
⑨비 고			
<p>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 의 생산을 위한 특정사업자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산업자원부장관 [인]                 </p>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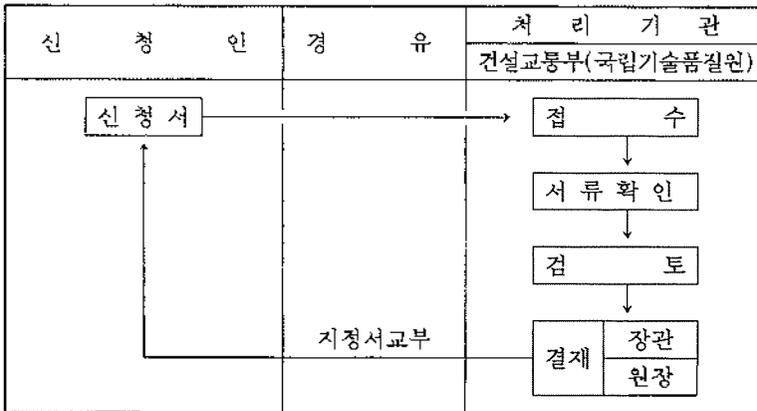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지청(추가)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 (FAX) ( )
	③설 립 근 거		④설 립 일 자
신 청 내 용	⑤대 표 자		⑥주민 등록 번호
	⑦주 소		
신 청 내 용	⑧사업소 소재지		
	⑨사 업 항 목		
⑩사 업 내 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 지청(추가)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교통부장관, 국립기술품질원장 귀하			
첨부서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 보유현황 1부 3. 검사인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청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 음

28282-13111민  
89. 12.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sup>2</sup>)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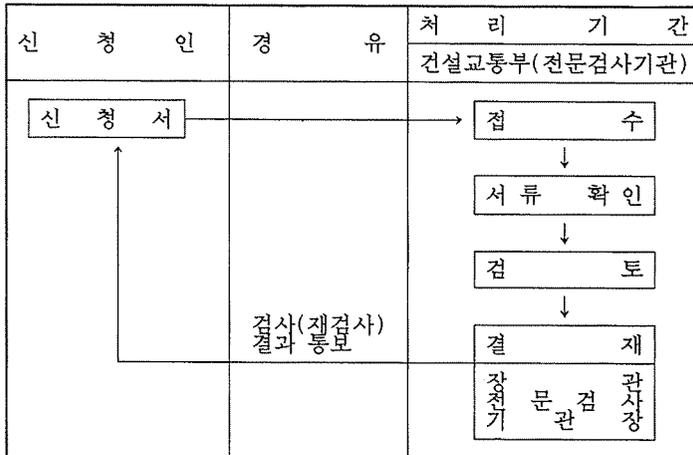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성능. 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FAX)			
	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자 본 금					
	⑥공장소재지					
검사(재검사)신청내용						
⑦품명	⑧규격	⑨단위	⑩수량	⑪총 액 (공장도)	⑫생산 번호	⑬검사장소 및희망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재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교통부장관, 전문검사기관의장 귀하						
첨부서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샘플 및 입자채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 등 생산체제에 관한 사항 1부 4. 성능. 품질검사결과통지서 사본(재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8282-13311민 89. 12.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시험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1 일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전화번호(FAX)		( )	
	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자 본 금					
	⑥공장소재지					
시험 사용 신청 내용						
⑦ 품명	⑧ 규 격	⑨ 단 위	⑩ 수 량	⑪ 총 액 (공장도)	⑫ 시험목적 및 내용	⑬ 시험장소 및 희망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건설교통부장관, 국립기술품질원장						
첨부서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7조)					수수료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와 장소						

28282-13611민  
89. 12.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